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7
----------	-----

제출년월일 : 2000.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67호, 2000. 3. 28)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함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정비 : 3개 사무
 - 보상금액의 산정(안전관리과)
 - 보상금 지급의 통지(안전관리과)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안전관리과)
-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삭제 : 1개 사무
 - 소유권 이전등기(안전관리과)

근거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안전관리과 소관 제28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0호를 삭제하며, 제31호를 제30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 전 관 리 과	28	○보상금액의 산정	법률제3782호하천법 중개정법률부칙제2조 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 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령 제8조
	29	○보상금 지급의 통지	동법시행령 제9조
	30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동법시행령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조 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안 전 관리과	1-27	(생 략)		안 전 관리과	1-27	(현행과 같음)	
	28	○ 보상금액의 산정	<u>법률제378 2호하천법 중개정법 률부칙제2 조의규정 에의한하 천편입토 지보상에 관한규정 제9조</u>		28	(현행과 같음)	<u>법률제378 2호하천법 중개정법률 부칙제2조 의규정에의 한보상청구 권의소멸시 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 입토지보상 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 령제8조</u>
	29	○ 보상금 지급 통지	<u>동규정 제 11조</u>		29	○ 보상금 지급의 통지	<u>동법시행령 제9조</u>
	30	○ 소유권 이전등기	<u>동규정 제 13조제2항 및 제3항</u>			(삭 제)	
	31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u>동규정 제 14조</u>		30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u>동법시행령 제11조</u>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보상금액의 산정) ①시·도지사는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9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①시·도지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해 편입토지의 소유자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